

대만의 병역법제와 대체복무제

강 현 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I. 대만의 체대역
 - 1. 서 설
 - 2. 도입배경
 - 3. 대체 복무 분야
 - 4. 자격 조건
 - 5. 복무 규정
 - 6. 대체복무실태
 - 7. 발전방향
- II. 대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1. 대만의 현황
 - 2. 신청권자
 - 3. 심사절차
 - 4. 복무영역
 - 5. 처벌규정
 - 6. 실시상황
 - 7. 병역거부자와 여타 대체복무자

I. 대만의 체대역

1. 서 설

대만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000만의 인구로 한국과 같은 규모인 60만 대군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 45만으로, 2000년대 들어와 38만 5천으로, 34만으로 다시 30만으로 급속히 병력을 감축해 왔다. 현재 2,300만 인구가 30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구 76.67명 당 군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4,800만의 인구에 69만명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69.57명 당 군인 1명을 배출해야 한다. 대만이 최근 절반 수준으로 감군을 단행한 결과 현재의 인구대비 병역의무 부담은 한국보다 조금 가벼워진 상황이지만,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당시 약 40만의 병력을 보유했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한국보다 인구 1인당 돌아오는 병역의무의 부담은 더 무거웠다.

대만이 90년대 후반 이래의 감군으로 병력자원에 여유가 생겨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만의 대체복무제는 <병력 인원 보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병력 인원의 자질을 낮추지 않는다. 병역의 공평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과잉 병력과 현역복무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병역 대상자들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운용하여 병역 대상 인력 자원을 전문 분야에 결합시켜 대체복무 필요 기관에 배치하여 보조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정부 공공 사무 혹은 기타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게 하였다. 대만은 협의의 대체복무제(병역 거부자를 위한)를 중심으로 제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유희병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종의 보충병제도를 사회적 서비스분야에 전환함으로써 현재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를 한발 앞서 시행하고 있다.

2. 도입 배경

대만은 국민당정부가 대만에 들어선 이래로 당시의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왔다.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국방을 현대화하고, 소수정예화하므로써 종래의 40만이라는 대규모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고첨단의 정밀한 무기들이 끊임없이 개량되고 생산됨에 따라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병력이 대폭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병력자원의 잉여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만정부는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지원병제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다.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유럽의 제도를 참조하였다. 대체복무제는 국가 안전을 확보하고 군복무의 공평성을 유지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였다. 입법원(立法院)에서 2000년 초 <<대체 복무 실시 조례>>를 통과시키고, 행정원(行政院)에서는 2000년 5월 1일부터 대체 복무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은 몇 가지 방향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로, 정예화(精), 소수화(小), 강력화(強)를 군대의 목표로 삼고, 초과인원은 사회공공서비스에 투입함으로써 군복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둘째로,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등을 계속해서 처벌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필요하게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셋째로,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병역기피수단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 청년의 숫자가 많아 병역제도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었으며, 대체복무제도를 채택하여 보다 많은 인원에게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로,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통해 병력인원의 수급을 저해하거나 군인의 자질을 떨어뜨리거나 병역의 공평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대전제가 있었다.

3. 대체 복무 분야

(1) 치안 분야

- ① 경찰역(役) : 기동 보안, 순찰, 교통 보조, 수용소 경비, 교정시설 경비, 기타 안전유지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 ② 소방역(役) : 재난 시 구조와 환자 처리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2) 사회 서비스 분야

- ① 사회역(役) : 독거노인, 상병유공자들, 심신 장애인 배려, 복지 업무, 국민 보건, 매장관리, 기타 사회 복지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 ② 환경보호역(役) : 환경 조사와 검사, 자원재생, 환경 청결 유지, 복사(輻射)건축물 조사, 건축 관리, 하천 관리, 수자원관리, 상습 침수 구역관리, 산비탈 관리, 지질 조사와 동식물 보호, 기상 관측 협조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 ③ 의료역(役) : 산간도서 지역에서 의료 보건 업무, 방역, 공공 위생 관리 등의 관련 보조 업무 담당.
- ④ 교육서비스역(役) : 산간도서 지역에서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 교육보조 교육과 학교 내의 안전 협조, 중퇴생 지도 등 교육 관련 보조 성질의 업무 담당.

(3) 기타 정부가 지정한 분야

- ① 문화서비스역(役) : 지역 사회의 건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 자원 보존 관련 업무 등의 보조 업무 담당.

- ② 사법행정역(役) : 공설(公設)변호, 사법 행정 등의 보조 업무 담당.
- ③ 외교역(役) : 외교, 해외파견기술단 각종 작업 보조 업무 담당.
- ④ 토지측량역(役) : 토지 측량 작업 보조 업무 담당.
- ⑤ 경제안전역(役) : 무역구조보호제도, 각종 산업 보호 제도 등의 보조 업무 담당.
- ⑥ 체육역(役) : 운동 경기 실력을 끌어 올리고 전 국민 운동을 널리 보급하는 등의 보조 업무 담당.
- ⑦ 공공행정역(役) : 정부와 협조하여 정보, 공문서, 병역, 대체복무 등에 관련된 공공 행정 사무를 보조하는 업무 담당.
- ⑧ 관광서비스역(役) : 관광 홍보, 관광 환경 미화, 국가공원 경관 유지, 여행자 자문 서비스 등의 보조 업무 담당.

4. 자격 조건

입대자원이 군대정원을 넘는 경우 자원신청을 통해서 대체복무역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이 일률적으로 대체복무역으로 징집된다. 대체복무를 신청자격은 다섯 가지이다.

(1) 종교사유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고,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병역 대상자는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후에 논의함)

(2) 가정사유

- ① 병역 대상자의 가족이 모두 65세 이상 15세 이하이거나 혹은 심신 장애나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는 자.
- ② 병역 대상자가 이미 결혼하였고 1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병역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가족이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①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 ③ 병역 대상자의 가정에 중급 이상의 심신 장애자가 있는데 병역 대상자와 환자를 돌볼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족이 아무도 없거나 있어도 ①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단, 중급이상의 심신 장애 가족이 1명 이상일 경우 심신 장애 가족이 매 한명씩 증가함에 따라 그를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3) 전문기술자격

병역 대상자가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 경력이 있거나 혹은 전공 훈련을 받은 자

(4) 자원봉사자격

자원 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지 만 1년이 되었으며 그 봉사한 시간이 150 시간 이상이며 자원 봉사 실적 증명서를 보유한 병역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다.

(5) 일반자격

병역 대상자가 앞서 언급한 네 개의 항목의 자

격 혹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체 복무를 신청한 자.

5. 복무 규정

(1) 복무기간

현역 상비군 대상자 중 대체 복무를 하는 자는 현역 상비군의 복무 기간보다 2개월이 연장되어 2년. 종교 사유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2년 2개월로써 현역 상비군의 복무 기간보다 4개월이 연장되며 대체 복무 대상자 혹은 가정 사유로 인한 대체 복무자의 복무 기간은 1년 10개월로 현역 상비군과 병역 기간이 동일하다.

(2) 징집교육훈련

대체복무역 훈련은 군사 기초 훈련과 전문 훈련으로 나눈다. 전자는 내정부(內政部)가 주관하는 32일간의 군사 기초 훈련으로 훈련 과정에는 병역자의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 교육, 장비 정비, 전투훈련, 사격훈련 등의 과정을 삭제하고 복무자의 학습 흥미를 고취하여 실용적인 훈련 과정이 되게 하기 위해 실제적이고 활발하며 생동감 있는 다양한 과정을 설계하였다. 내용은 적응 교육, 전문 과정, 긴급 구조, 일반 교육 과정과 체력 활동 등이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적응 교육 (20시간), 전문과정(26시간), 긴급구조과정 (20시간), 일반교육과정(69시간), 체력활동(56시간)으로 구성된다. 야간에는 사기를 북돋는 노래를 가르치고 문화 오락 활동, 좌담회, 영화 감상, 편지 쓰기 등을 위주로 하므로 복무자의 심신을 조절하도록 한다.

전문 훈련은 군사 기초 훈련을 마친 후 대체 복무를 필요로 하는 각 기관에서 계속하는데 근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 등에 따라서 각 2주에서 12주의 훈련 과정을 계획한다. 물론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을 시행하지 않는다.

각 대체복무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자를 적합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신청할 시 그의 전문 분야에 의거하여 복무할 대체복무 분야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기수의 군사 기초 훈련 기간에 주관 기관은 <일반자격>의 복무자에게 공개, 공평, 공정한 방식으로 배치한다.

6. 대체복무실태

(1) 지휘책임

대체복무제도 실시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내정부(內政部)는 대체 복무 주관 기관으로서 대체 복무자의 전반적인 복무 관리 작업의 계획과 지휘의 책임을 맡는다. 복무 분야의 각 주관 기관은 대체 복무를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 필요에 의거하여 대체 복무자의 복무와 생활 관리 규정을 정한다. 내정부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대체 복무자를 지도하고 그들의 심리와 행위의 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복무자의 심신 상황 및 관리 기술 요구에 의거하여 체력훈련, 기본훈련, 심리자문, 생활 교육, 덕성, 법률과 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지도 교육반을 개설하여 심리 자문 및 단체 지도를 실시

하여 복무자의 빗나간 마음가짐과 행동을 바로 잡도록 한다.

내정부역정서(內政部役政署)는 2002년 3월 1일 성립된 후 전체적으로 대체복무자에 대한 감독기구로서 역할한다. 정기, 부정기적인 감독으로 각 복무 단위의 인력 운용, 업무 계획 및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와 통보에 협조하고, 복무자에게 규율을 엄수할 것을 감독하고, 사고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복무자의 복무능률을 향상시킨다.

(2) 인력운영

대체 복무 제도를 실시한 후 2004년까지 모두 25기에 걸쳐 총 43,712명이 입대하여 이미 각 복무 단위로 배치되었다. 각각의 구성을 보면 경찰역 사회 보안(10,325명), 경찰역 사회 순찰(1,360명), 경찰역 안전 보호 유지(198명), 경찰역 수용소 경비(226명), 경찰역 교통 보조(1,462명), 경찰역 교정 기관 경비(5,086명), 소방역(5,116명), 사회역(3,376명), 환경 보호역 환경 보육(7,528명), 문화 서비스역(1,216명), 사법행정역(2,603명), 외교역(113명), 토지 측량역(144명), 경제 안전역(84명), 공공 행정역(1,765명), 체육역(238명), 관광서비스역(428명), 등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1600여명은 이미 9.21 대지진 재해 구역에 투입되어 소방, 교육, 의료, 심리지도, 수자원관리, 환경 보호, 토지 측량, 건설 등 재해 후 재건 작업에 공헌을 하였다.

7. 발전방향

첫째, 사회 서비스 분야의 복무 범위와 인원을 증가시키고 사회 서비스 기층(基層)을 넓힌다. 사회 각종 서비스 업무에 투입을 증가시킴으로 사회 복지와 공익을 높인다. 의료역, 환경보호역, 교육서비스역, 문화서비스역, 사회역등의 대체복무를 실시하는데 본질상으로는 모두 사회 서비스의 복무 분야이다. 미래에는 사회 서비스의 특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각 대체복무 필요 기관의 전체 계획에 협조하여 상술한 사회 서비스 각 부문의 대체복무 인원을 증가시키고 관련 복무 분야 간에 상호 인력과 유통이 되도록 운용한다.

둘째, 역정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교정 제도를 설립한다. 역정훈련센터를 설립하여 대체복무자의 군사 기초 훈련, 전문훈련, 관리 간부 정통훈련, 대체복무 및 역정 업무 인력의 기능 훈련 등을 시행한다. 그에 더해 대체복무자 교정 제도를 실시하려 불량한 대체복무자에 대한 재지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그들의 편차 행위를 바로 잡음으로 대체복무자 대한 훈련과 사용이 일치되게 한다는 목표를 실현한다.

셋째, 대체복무자들이 전문 자격증 획득이나 국가고시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전문 자격증이나 국가고시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복무자들을 전문 자격증 시험을 통해 복무자들의 업무 지식, 능력을 결합하여 계속 사회 서비스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째, 대체복무자들이 퇴역한 후 공익 서비스

조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퇴역한 대체복무자들이 각자의 적합한 전문 분야와 성향의 공익 서비스 조직(단체)에 받아들여지도록 한다. 이전에 소방역에 복무했던 복무자라면 내정부 소방서의 계획에 의해 퇴역 후 각 지구 의무소방 업무 조직에 투입되며 이를 통해 인력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회 서비스 기능을 넓히게 된다.

II. 대만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 대만의 현황

유럽 각국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병역제도와 종교적 신앙에 근거한 양심적 결정의 상호 충돌로 인한 양심범의 발생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국가들이 헌법이나 병역법에 특별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법을 제정하여 종교적 양심상의 사유로 인해 현역군인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자에게 병역의무를 면제시키거나 대체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전의 대만의 상황은 우리와 마찬가지로였다. 대만에서는 과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반복적으로 처벌하였고, 그 형기가 군복무기간의 몇 배에 이를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체복무제도 실시 조례 제5조에 ... ‘병역 대상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해 대체 복무를 신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의 문제는 전면적으로 해결되었다. 다만 대만은 종교

사유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어서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비종교적 양심적 동기에서 병역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전문 자격을 갖추거나 자원봉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체복무에 지원하면 된다. 이들은 집총하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비군사적인 대체복무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치열한 권리 논쟁이 제기되지는 않는다.

2. 신청권자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던 자로서 이미 본인의 심리적 상태가 군복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고려될 경우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 시에는 이유서, 이력서, 서약서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의 신앙은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 단체여야만 한다.

3. 심사절차

대만에서 대체복무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방부나 병무청이 아니라 내무부이다.¹⁾

어떠한 의도에서 관할기관을 결정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무부(內政部 내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3개월 내에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를 마친다.

- ② 심의시 복무자의 신앙, 동기, 심리 등의 이유가 진실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해야 하며 그에 더해 소속 종교의 책임자 혹은 증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 ③ 심의안건에 의문이 있거나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신청인에 대하여 관찰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관찰기간의 규정은 대만의 대체복무심사과정에서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평가된다.

4. 복무영역

복무영역은 사회안전(경찰, 소방), 사회서비스(사회복지, 환경보호,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 정부가 정한 영역으로 한다.²⁾

5. 처벌규정

병역 대상자들이 종교 사유를 가장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현역군복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역군복무대상자가 종교 사유를 가장하여 대체복무를 신청할 시 2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체복무 실시조례 제54조).

이른바 거짓 양심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대체복무신청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은

1) 대체복무조례(2003.6.18개정) 제 2조

2) 조례 제 4조

다소 의아스럽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유사규정을 두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실현성이 전혀 없는 규정이다. 가장 성공하면 대체복무자로 이미 관정받게 되고, 가장 실패하면 대체복무자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경우에도 형벌이 작동할 여지가 없다.

6. 실시상황

종교적 사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양심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도 실시 전인 1999년 6월 15일부터 각 직할시, 시, 도 당국은 종교적 사유로 군인의 의무를 이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징집대상자를 징집유예하는 경과조치를 취했다.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13명이 징집 연기를 신청하였고 2000년 5월에 대체복무를 신청하였다. 이들 병역거부자의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 불교, 일관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대체

복무가 부과되었다. 2003년까지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97명이며, 이 중 94명이 심사결과 종교이유로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아 군사훈련을 면제받고 현역보다 긴 대체복무를 수행하였다. 대만당국은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결과 종교를 빙자한 대체복무지원자는 없었으며, 대체복무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상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인 33개월개월에서 현역보다 4개월 긴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였다.

7. 병역거부자와 여타 대체복무자

대만에서는 전반적으로 군축상황에서 유희병력을 사회서비스에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경로중에 하나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전반적인 후예 사회복무제에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